

성폭행범 살해 무죄

서울고법 유죄 원심개

96.3.9
서울고법 형사1부는 28일 자신을 욕보이려던 남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선고를 받은 홍아무개(43·서울 서대문구 아현동)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.

재판부는 판결문에서 “홍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한 조아무개(52)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것은 인정되지만, 홍씨의 행동은 정조를 보호하기 위해 급박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므로 비난 가능성이 없다”고 밝혔다.

홍씨는 94년 10월 친구 소개로 알게 된 조씨가 자신을 욕보이려 하자 조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불기속 기소돼 지난해 9월 실형을 선고받았다. 김세준 기자